

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11. 07. 28. 최초제정 | 2025.09.01. 부분개정 |
| 2016. 04. 01. 부분개정 | 2025.11.21. 부분개정 |
| 2016. 12. 20. 부분개정 | 2026.04.01. 부분개정 |
| 2017. 12. 29. 부분개정 | |
| 2021. 02. 01. 부분개정 | |
| 2021. 11. 01. 부분개정 |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09.01., 2025.11.21.>

제2조(기능 및 사업) 센터는 구성원의 진로 및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및 대학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과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취업·진로 지원 전략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자격증/취업 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취업·진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
5. 취업·진로 정보제공 및 추천에 관한 사항
6. 취업 전산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7. 취업기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8. 취업·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9. WHCR(취업인증)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취업 관련 정부 및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11. 취업·진로지도 이력 및 D/B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12. 산업 동향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
13. 삭제 <2025.09.01.>
14. 삭제 <2025.09.01.>
15. 삭제 <2025.09.01.>
16. 삭제 <2025.09.01.>
17. 삭제 <2025.09.01.>
18. 삭제 <2025.09.01.>
19. 삭제 <2025.09.01.>
20.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1. 삭제 <2026.04.01.>
22. 기타 취업에 관한 사항
23. CA(Career Advisor)교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26.04.01.>

[본조 개정 2021.02.01., 2025.09.01., 2025.11.21.]

제3조(조직구성) ① 센터에는 취업지원센터장, 과(팀)장과, 약간 명의 직(팀)원과 운영위원

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09.01., 2025.11.21.>

센터 업무를 담당할 상담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운영의 효율성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「진로 및 취업 운영위원회」를 둔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
②진로 및 취업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
③진로 및 취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⑥삭제 <2025.09.01.>

제5조(진로 및 취업 운영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
1. 진로 및 취업 관련 운영규정의 제·개정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2. 진로 및 취업 관련 운영 결과 분석·환류·개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02.01., 2025.11.21.>
3. 취업률 향상에 관한 사항
4. 삭제 <2025.11.21.>
5. 내·외부의 진로 및 취업 사업(프로그램)의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11.01., 2025.11.21.>
6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21.11.01.>

제6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지침은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02.01.>

제7조(평가/활용) 취업지원센터 운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 개선에 반영·활용한다.<개정 2021.02.01., 2025.09.01., 2025.11.21.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